2021년도 제29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1. 10. 25.(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8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47건(안건번호 제2021-145769호~14681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45769호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기준 정립을 위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건번호 제2021-145770호~145782호 및 제2021-146785호~146814호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바 시정권고 가결함.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49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97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28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5쪽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심의대상 게시물 제목, 저작물명,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6쪽 저작물명, OTT 서비스명, 심의대상 게시물 제목, 7쪽, 8쪽 저작물명 등 민원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비식별 처리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제2호 안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건은 원안대로 공개, 제2호 안건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54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1-145769호~146814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5769호는 블로그를 통하여 국내 가요 '☆☆☆☆☆☆☆☆☆☆'의 피아노 악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악보의 pdf 파일 및 캡처본, 해당 악보를 직접 실연한 유튜브 영상의 임베디드 링크 2개, 직접 작성한 글, 광고 배너로 구성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본문 중 "★★★★★★★★★★★★★★★★★★★★★★★★★★★★★", "○○" 등의 표현, 심의대상 블로그의 내용, 악보의 워터마크 등으로 미루어 보아 게시자가 직접 편곡 한 악보를 제공 중인 것으로 보임.
  해당 악보는 ●●●● 분량의 원저작물을 약 2분 10초 분량의 피아노 연탄곡으로 편곡한 것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악보와 상

이함.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4576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민원인 신고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민원인 신고 내용을 제시하면서) 민원인은 “◎◎◎◎◎◎◎◎◎◎◎◎◎◎◎◎◎◎◎◎◎◎◎”, “◇◇”이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음.

- B 위원: 게시자인 ‘◆◆◆◆◆’는 사업자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블로그 운영자로, 해당 명칭으로 악보 제작 및 권리 표시를 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 C 위원: 블로그 내용에 비추어 보아 전문적으로 피아노 연주를 하는 자로 보임.

- A 위원: 본인이 직접 편곡한 악보만 게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 B 위원: 영리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2건의 광고 배너가 게재되어 있으며, 다수의 캡션이 확인됨. 우리 심의위원회는 광고 배너가 확인되는 경우 불법복제물 이용을 통한 광고 수익 창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왔음. 더불어 사안과 같이 다수의 캡션이 확인된다면, 광고가 게재된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유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C 위원: 해당 광고 배너는 블로그 자동 광고로 보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정도의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광고 배너 외에는 영리적 목적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음.

- D 위원: 블로그의 광고 수익 규모는 어떤지?

- 강나래 전문위원: 광고 배너의 경우 설정 키워드, 연결되는 링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매겨짐. 따라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광고 수익을 파악할 수는 없음.
  다만 □□□□□ 블로그의 경우, 광고 노출만으로도 수익을 배분받게 되며, 블로그 운영자가 방문자 수, ■■■■■■■■■■■■■■■■■■■■ 등 일정 조건을 달성한 후 직접 광고 매칭을 신청하여야 함. 광고 배너를 게재하는 행위에 블로그 운영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전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게시자의 블로그 운영에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임.

- E 위원: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영리성을 부정하기도 어려워 보임.

- D 위원: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광고가 게재되는 형태로 이해됨. 블로그 운영자인 게시자는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참고로 편곡한 악보와 관련하여, 기존에 부결한 사안은 원저작물의 극히 일부 분량만을 사용하였거나, 영리성 또는 시장대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였음.

- C 위원: 편곡 악보에 대한 합법 시장이 존재하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최근 악보에 대한 저작권 의식이 제고되면서, 저작권자들이 허락 없는 채보 및 악보 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음악저작물의 멜로디 내지 반주를 제공하는 것을 주로 하는 기존 악보 플랫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누구나 음악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편곡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되, 권리자 단체의 이용허락을 얻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악보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음.

- E 위원: 블로그 광고 수익 등을 고려했을 때 심의대상 게시물에 영리성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권리자가 직접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민·형사상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C 위원: 비록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얻지 않고 편곡 악보를 제작 및 제공 중이나.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불법복제물 복제·전송 사안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고, 영리성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D 위원: 공정이용의 측면에서 판단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 중이고, 광고 배너 게재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영리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악보 저작물에 대한 심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B 위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악보 관련 음악저작물 저작권 사안으로, 이번 기회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심의 기준을 정립하자는 의견임.

- A 위원: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에 대한 비교형량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가결 시에도 단순 경고만 할 것인지 삭제 및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C, E 위원: 전체위원회를 통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45769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5770호~14578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 블로그에서 '▲▲▲▲▲▲▲', □□□□□ 블로그에서 '▽▽▽▽▽▽▽▽▽▽▽' 등을, ▼▼▼▼에서 '◁◁◁◁◁◁◁◁◁◁◁◁◁◁◁◁◁◁◁◁◁', 웹하드 사이트에서 '◀◀◀◀◀◀◀◀◀', '▷▷▷▷▷▷▷▷▷▷▷▷▷'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5783호~146814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만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게임 '바이오하자드 RE:3'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5829호는 해당 저작물의 한글 무설치 버전을 2,08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2020. 4. 3. 출시되어 68,400원에 판매 중임.

  (방송 '오징어 게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6506호는 해당 저작물의 전편 고화질 영상을 1,100캐시에 판매하고 있음.

  (컴퓨터 프로그램 'AutoCAD 2018'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6579호로, 해당 저작물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연간 이용료가 약 210만원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에서는 265포인트에 판매 중임.

  (긴급 대응 저작물 영화 '▶▶▶▶'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

건번호 제2021-146785호~146814호는 ♤♤♤♤♤♤♤♤ 개봉한 국내 영화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6785호는 ♠♠ '♡♡♡♡♡♡♡♡♡♡'에서 전송 중임.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45770호~14681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45770호~14681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45769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고, 제2021-145770호~14681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29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9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1. 1.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